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구인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방지를 위한 검찰청 구치감 등 유치>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72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차규근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2024. 7. 4.
3. 회 부 일: 2024. 7.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인된 피의자(이하 ‘구인 피의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할 수 있음.

하지만 실무적으로 경찰 신청 사건 구인 피의자의 유치장소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검찰 청구 사건 구인 피의자의 유치장소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정해지는데, 이는 과거 모든 구인 피의자의 호송·인치 업무 책임이 경찰에 부여되어 있었던 것을 2015년 검찰과 경찰 간 ‘호송·인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검찰이 수사한 구인 피의자에 대한 호송·인치 업무는 검찰이 하도록 바뀌면서 자리 잡은 관행임.

문제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된 구인 피의자와 달리 교정시설에 유치된 구인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로 환복하고 사진 촬영과 지문捺인을 하게 됨으로써, 피의자가 모욕감과 수치심을 겪게 된다는 데에 있음.

실제로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구인 피의자를 교도소 등에 유치하여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검찰과 법원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그 이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정시설에 간이입소절차가 도입되었으나, 유사 수의 착용, 지문 날인 및 사진 촬영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인격권 침해행위는 계속 발생하고 있음.

무엇보다 법원 내 피고인·피의자 대기실과 검찰청 구치감이라는 인격권 침해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국가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시설들을 구인 피의자의 인치 또는 유치장소로 규정하지 않고 교정교화가 본연의 임무인 교정기관의 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원과 검찰의 책임을 자기책임원리에 반하여 교정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며, 교정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더욱 늘리는 것임.

한편,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비단 구속 전 피의자 뿐만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관련된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도 구인 피고인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71조, 제71조의2를 준용하는 체계로 되어 있음.

이에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 그 인치장소를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로 명확히 하며(안 제71조),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 외의

장소에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치장소를 검찰청 구치감과 경찰서 유치장으로 하고, 동 유치장소가 수용공간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유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인권침해와 교정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전가를 방지하고(안 제71조의2제1항, 제2항), 동 개정안을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서 준용하는 체계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구인한 피고인의 인치 장소를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로 명시하고,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청 구치감¹⁾ 또는 경찰서 유치장²⁾을 유치장소로 하되, 수용인원의 정원 초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치소 또는 교도소³⁾에 유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및 제71조의2).

현행	개정안
第71條(拘引의 效力) <u>拘引한 被告人을 法院에 引致한 境遇에 拘禁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한 때</u>	제71조(구인의 효력) <u>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는 인치장소는 법원 내 피고인 대</u>

1) 피의자, 피고인 등의 검찰 조사 시 대기하기 위한 장소로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되어 있음.

2)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설치하는 시설로 법적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준용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유치장)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유치장)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로써, 구치소는 미결수용자 또는 사형확정자, 교도소는 19세 이상 수형자 또는 사형확정자를 수용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에는 그 引致한 때로부터 24時間 内に 釋放하여야 한다.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u>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u> 유치할 수 있다. <u>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u> <단서 신설> <신 설>	<u>기실로 하고,</u>----- -----.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① - ----- -----<u>검찰청 구치감 또는 경찰서 유치장</u>----- -----<u>. <후단 삭제></u> <u>단, 검찰청 구치감 또는 경찰서 유치장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유치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유치기간은 <u>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u>
---	--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⁴⁾ 이를 같은 법 제201조의2에 따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시에 준용하고 있음.⁵⁾

4) 「형사소송법」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5)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인 피의자 및 피고인(이하 “피의자 등”)의 유치 실무를 살펴보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등의 호송 업무를 전담하던 과거에는 통상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였으나, 2015년 검찰과 경찰 간에 “호송·인치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현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 등에 대하여는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이 호송 업무를 수행⁶⁾하게 되어 통상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유치하고 있음.

<검찰·경찰 간의 호송·인치업무 양해각서 주요 내용(2015. 8. 27.)>

○ 검찰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다음 3가지 호송·인치 업무를 수행함

- ▶ (검찰이 지명수배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호송) 검찰이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수배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경찰이 체포하였을 때, 그 체포된 사람을 경찰관서에서 수배한 검찰청까지 호송
- ▶ (검찰이 체포·구속한 피의자의 유치장 호송) 검찰 수사 중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고, 이후 추가 조사 등을 위하여 해당 검사실로 인치
- ▶ (검찰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의 호송) 검찰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하고, 구속영장 발부 시 피의자를 구치소 등 구금장소로 호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6)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2조(호송공무원)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간의 호송은 교도관이 행하며, 그 밖의 호송은 경찰관 또는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이 행한다.

○ 경찰은 호송·인치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원 286명을 검찰에 이관함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이 검찰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은 신규 채용 인원 중 286명을 줄이는 대신 검찰은 그 인원만큼 신규 채용 인원을 늘리는 것임

○ 검찰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령 정비, 예산 확보, 인력 채용 등 호송·인치 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완비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검찰이 수사하는 피의자 등에 대한 호송·인치업무를 수행함

자료: 2016. 8. 27.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죄질이 중하거나 다른 유치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만 정밀검사를 받게 되나,⁷⁾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신입자를 수용하는 경우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등 다른 사람과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⁸⁾ 피의자 등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구속 여부 결정 전까지 피의자를 유치하는 경우 가급적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도록 관행을

7)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신체 등의 검사) ④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제7조 제1항의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그 종류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표검사 :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
2.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3. 정밀검사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진촬영 등) ① 소장은 신입자 및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의 식별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진촬영,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선할 것을 권고⁹⁾한바 있음.

이에 따라 2017. 12. 19. 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제16조의2¹⁰⁾를 신설하여 교정시설 유치 시 간이입소절차를 도입하였음. 동 절차에 따르면, 현재 체포된 피의자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사진촬영 및 지문채취가 생략되고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것과 유사한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가 이루어지나, 경찰서 유치장과는 달리 환복 및 수용자번호 지정 등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입소절차에 있어 구치소·교도소와 경찰서 유치장 차이점>

	구치소, 교도소 (형집행법, 지침 등)		경찰서 유치장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영장발부 전 (간이입소절차)	영장발부 후 (통상의 입소절차)	
사진촬영	×	○	×
지문채취	×	○	×
수용자번호 지정·부착	지정 ○ 부착 ×	지정 ○ 부착 ○	×
환복	간소복 (간이검사 시 사복)	수용자복	×
신체검사	- 간이검사 (죄질경미) - 정밀검사 (죄질중한 경우 등)	정밀검사	- 외표검사(죄질경미) - 간이검사(일반적인 유치인), - 정밀검사(죄질중하거나 위해우려)

자료: 법무부

9) “교도소나 구치소 유치는 유치장 유치와는 절차나 관리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그에 수반되는 피의자의 불이익이나 수치심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교도소나 구치소 유치는 경찰서 유치장 유치에 비하여 과도하게 유치인의 신체의 자유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25. 자 결정 16진정0121100/0122000(병합)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간이입소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입자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한다.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2.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 및 제71조의2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개정안은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을 인치장소로 하고,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청 구치감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도록 함으로써, 교정기관 수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인정됨.

다만, 제71조의2에 따른 유치의 기간은 최대 24시간이므로 피의자 등을 유치하는 장소는 야간 동안에도 수용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검찰청 구치감의 경우 검사가 피의자신문 등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대기하기 위해 마련한 장소로써 관리를 위한 인력 및 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아 유치장소로서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구치소 등 교정시설 유치 시 과도한 신체검사 등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한다면 개정안이 지적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므로, 교정시설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등을 규율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을 개정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되는 피의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적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 또한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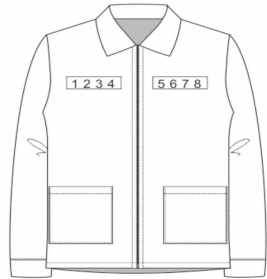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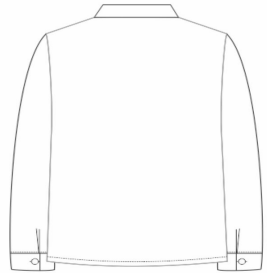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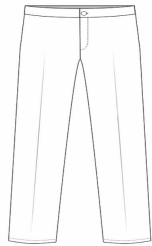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검찰청 구치감을 원칙적인 유치장소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인력, 시설 등 유치 피의자 등에 대한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고, 형집행법의 개정 등 교정시설에 유치되는 피의자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개정안에 대하여 **경찰청**은 ① 검찰청 구치감은 모든 지검 또는 지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9시부터 18시까지 운용되고 있어 구인된 피의자를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 ② 현재도 검찰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도 경찰에 의뢰하여 경찰서 유치장을 이용할 수 있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③ 구인장의 유치장소와 구속영장의 구금장소가 다를 경우 피의자에 대한 장소적 이전이 불가피하여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63

[참고자료]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별표 1

1. 평상복

색채 및 재질	규격	도식화
가. 남자 수용자의 것 (1) 겨울옷 상의 (가)수형자: 암청회색의 혼방지 (나)미결수용자 : 카키색의 혼방지 (다)피보호감호자복: 베이지색의 혼방지 (2) 겨울옷 하의 : 상의와 같음	가. 남자 수용자의 것 (1) 겨울옷 상의 (가) 디자인은 앞지퍼일자형 점퍼로 한다. (나) 앞 채움은 중앙에 지퍼를 붙이고, 하단 좌우에 걸주머니를 단다. (다) 소매 끝은 커프스를 붙여 단추를 단다 (라) 안감은 65g의 누비솜을 사용한다. (2) 겨울옷 하의 (가) 디자인은 긴일자형지퍼바지로 한다. (나) 주머니는 붙이지 아니하며, 뒷판 허리 전체에 너비 3cm 고무밴드를 넣는다.	가. 남자 수용자의 것 (1) 겨울옷 상의 (가) 앞면  (나) 뒷면  (2) 겨울옷 하의 (가) 앞면  (나) 뒷면 